이 의 신 청 서

사 건 20○○차○○○ 물품대금 신 청 인(채무자) ◇◇◇ 피신청인(채권자) ○○○

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그 대금을 6개월에 걸쳐 완납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합니다. (신청인은 지급명령 정본을 20○○. ○. ○. 송달 받았음)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(채무자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	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	
		십 내(민시	-소송법 제470조)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	리러버그	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
	수만큼의 부본 제출	관 련 법 규	제474조
불복절차	·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)		
및 기 간	・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		
기 타	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3항은 "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		
	조의 규정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		
	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		
	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		
	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의신청에 의하여		
	소송절차로 이행될 때에 지급명령신청인은 인지를 보정하여야 함.		